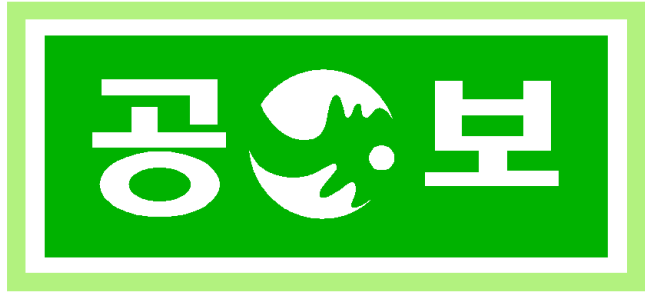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31 호 2013. 7. 30(화)

규 칙

○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6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]2

훈 령

○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3호[울산광역시 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 폐지규정]4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**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
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**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유종오



2013년 7월 30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6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**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호제3호”를 “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관외대출은 1회 5권, 도서관 통합 8권 이하로 하며,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13조제2항”을 “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이동도서관의 대출기간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 ◆

1. 개정이유

- 북구의회 이해경의원이 발의하여 2013. 5. 24.자로 진문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항 변경 및 자료대출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료대출 통합권수 신설 (제7조)
- 나.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(제8조)
- 다. 이동도서관 대출권수 삭제 (제14조)

울산광역시 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
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오



2013년 7월 30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3호

울산광역시 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 폐지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폐지이유

- 가. 훈령의 상위법령인 「법령집 등 편찬 및 발행 규정」 제6조(법령집의 보관등)가 삭제되었으며, 현재 「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되어 제2조에 “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제공의부”를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과 활용으로 종이 법령집 등의 보관규정이 불필요함.
- 나. 법령집의 별도 보관 및 추록(가제)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
- 다. 각종 법령정보의 전산화에 따라 관계 규정은 폐지하는 추세임.

2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 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」 폐지